

# 한국연구재단 지원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

## 1. 신고 방법

-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온라인

- 연구재단 홈페이지 ▷ 고객공간 ▷ 신고 및 접수 ▷ 연구부정행위 신고

### ② 전자우편 : ethics@nrf.re.kr

- '연구부정행위 신고' 페이지의 서식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내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 등과 함께 전송

### ③ 우편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조사법무팀

- '연구부정행위 신고' 페이지의 서식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내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 등과 함께 발송

## 2. (필독) 신고 전 유의사항

- 신고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고 접수기관, 익명 신고 요건, 검증 책임기관 등을 이해하시는 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연구재단 지원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부정 의혹만 접수 대상!

대학 등의 자체 연구 활동(학위논문 발표, 자체예산 수행 연구 등) 또는 한국연구재단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과제의 연구부정 의혹은 해당 기관(연구수행 당시 저자 소속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지원 여부와 지원 주체는 논문의 사사표기(감사의 말씀, acknowledgements 등)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위탁관리기관이므로, 타 정부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부정 의혹은 해당 부처 또는 해당 위탁관리기관(전문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위탁관리기관이 한국연구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논문의 사사표기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연구자 소속기관(저자가 논문에 기재한 소속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는 실명이 원칙! 익명 신고는 구체적 증빙이 필수!!

신고는 실명으로 함이 원칙이나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익명 신고도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익명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의견을 묻거나 자료의 보안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거의 제출은 필수 요건입니다.

### 【참고】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증거 사례

유형	증거의 예
위·변조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위·변조 부분 적시, 위·변조 판단 근거(위·변조 부분의 원본이 포함된 파일 또는 이미지) 제출
표절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표절대상 원문의 출처, 구체적인 표절 비교 부분 적시
부당한 저자 표시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부당한 저자의 판단 근거(해당 연구결과물의 연구노트 및 연구 참여 기록, 피조사자의 연구업적 목록, 해당 연구과제 수행 당시 피조사자의 소속 및 활동 내역 등)
부당한 중복게재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이전 연구결과물의 출처, 구체적인 중복 부분 적시

##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연구기관’이 검증!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관계부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검증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성명, 소속, 연락처)를 이관합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 이관 동의는 실명 신고로 처리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익명 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되더라도 검증책임이 있는 연구기관이 익명의 신고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가 없으면 신고자에게 본조사위원 기피 신청, 의견진술, 이의신청 등의 기회를 보장할 수 없고 예비조사 및 판정 결과 등 조사 진행사항을 알릴 수 없으므로 가급적 익명성이 보장된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등)라도 해당 연구기관에 알려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 3. 연구부정행위 신고 범위

- 한국연구재단 지원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발생한 아래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b>표절</b>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b>부당한 저자 표시</b>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b>부당한 중복게재</b>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b>조사방해</b>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b>기타*</b>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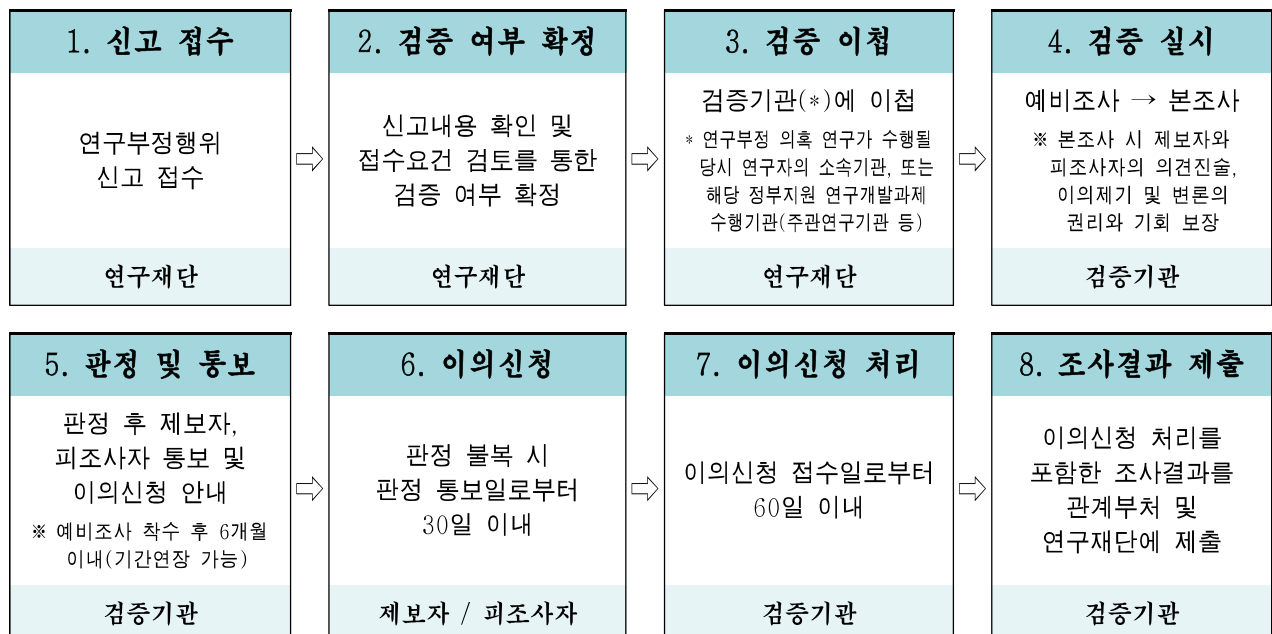
\*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한국연구재단 지원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자의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 등은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핫라인’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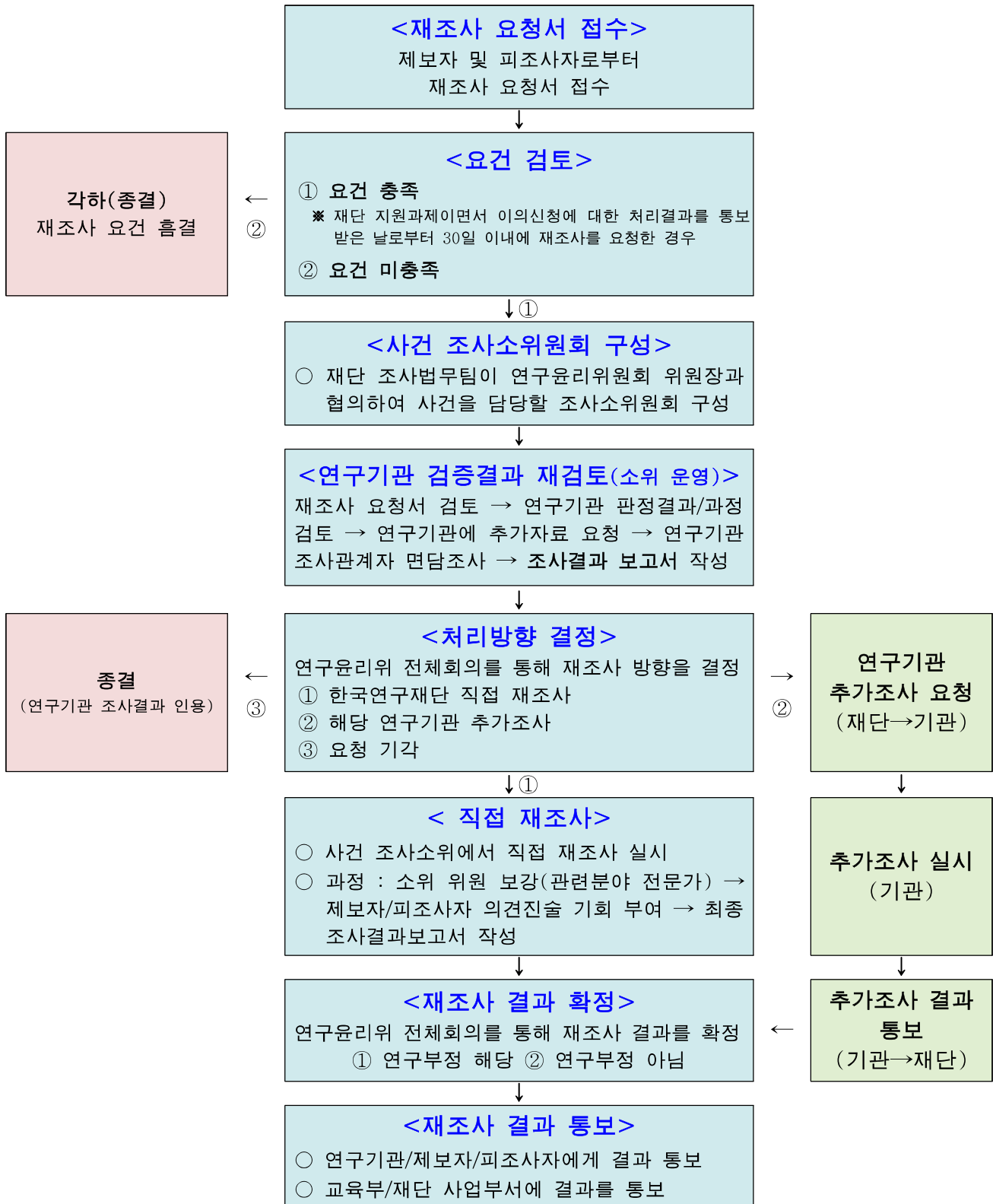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고객공간 ▷ 신고 및 접수 ▷ 감사실 핫라인

#### 4. 신고 처리절차

- 한국연구재단 지원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신고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검증 책임주체)의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 재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5. 신고자 권리 보호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연구재단은 신고자의 의지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 한국연구재단은 신고자가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6. 관련 규정

- 한국연구재단 지원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소관 부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처리절차 등을 참고하시는 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b>교육부</b>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b>과학기술 정보통신부</b>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사용글꼴 (출처)

문체부 제목 바탕체, 문체부 돋움체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Kopub 돋움체 (한국출판인회의)